

객원·특임교수 임용규정

제 정	2006.	3.
개 정	2013.	1.
개 정	2018.	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3항 규정의 객원·특임교수의 자격, 임용절차,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 ①객원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내·외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및 교육전문직에 근무경력이 있고, 전공분야 또는 근무분야에 대한 경력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나 그 분야에 대한 강의, 공동연구와 논문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여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예.체능계열과 특수분야는 특별한 자격이 인정될 경우 학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②특임교수라 함은 대학교육, 학술연구 및 경제·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임용절차) ①객원·특임교수의 임용대상자는 해당학과(부)장 또는 교무위원이 총장에게 추천한다. (개정2013.1.1.)

②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객원·특임교수로 임용한다.

제4조 (처우) ①객원·특임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객원·특임교수에 대하여 공동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촉할 수 있고 연구 및 논문지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(임기) 객원·특임교수의 임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75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외국인 객원·특임교수의 경우 총장이 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히 인정한 경우 75세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.(개정2018.02.08.)

제6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자 신규채용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